

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3453
----------	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6년 3월 10일

제안자 : 기획경제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공포 예정인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」(2026.3.6.정부이송)을 반영하여 청년의 범위를 15세 이상 39세 이하로 수정하고(안 제2조), 대상과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해석상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장의 ‘연령 조정’ 및 ‘유예기간 부여’ 권한을 삭제함(안 제5조제5항).

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‘청년’의 범위를 15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함(안 제2조).
- 시장의 연령 조정 및 유예기간 부여 권한을 삭제함(안 제5조제5항).

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‘청년’의 범위는 15세 이상 39세 이하로 한다.

안 제5조제5항을 삭제한다.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청년”의 범위는 15세 이상 39세 이하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청년”의 범위는 「 <u>청년고용촉진 특별법</u> 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의 <u>규정에 따른다.</u>	제2조(정의) ----- <u>15세 이상 39세 이하로 한다.</u>